

##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

### 심사보고

##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6.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4. 6. 30

다. 상정일자 : 2004. 6. 30.

(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)

#### 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조규문

나. 제안이유

-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력 확보 지원이 필요
-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『변화와 혁신』 『지방분권』 『국가균형발전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
- 재해유형의 다양화, 광역화, 대형화에 따른 읍면 방재업무 수행상 보강 필요
- 전라남도로부터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의 상시정원으로 조정 권고

다. 주요내용

-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『혁신분권담당』 설치
  - 혁신분권담당 : 지방행정6급
  - 혁신분권담당 팀원 : 지방행정7급 1명, 지방행정8급 1명
  - 『혁신분권담당』에 책임하는 정원의 존속기간은 '07. 6. 30까지로 함.
  - 13개 읍면에 방재인력 보강 (읍면 각 1명씩)
  -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을 현 정원에 포함.

#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안영순)

- 본 개정조례안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 목표를 지방적 구현을 위해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『혁신분권담당』 설치 인력 3명, 재해유형

의 다양화, 광역화, 대형화에 따른 읍·면 방재업무 인력 13명과 그동안 한 시정원으로 관리되어 왔던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2명에 대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상시 정원으로 조정하라는 권고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.

- 본 개정조례안은 법규상,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#### 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 략”

#### 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#### 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#### 7. 첨부 :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##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55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640명
2. 의회사무과의 정원 : 15명

조례 제1649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부칙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(시행일)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한시정원) 이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본청 정원중 정원 2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정원의 총수에 포함한 상시정원으로 한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한시정원)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 3명(행정6급 1명, 행정 7급 1명, 행정8급 1명)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정원으로 환원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39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624명 2. 의회사무과의 정원 : 15명	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55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640명 2. 의회사무과의 정원 : 15명
조례 제1649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.	조례 제1649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한시정원)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정원의 총수에 포함한 삼시 정원으로 한다.